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이라 칭한다.(이하 ‘영재교육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 영재교육원은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 영재교육원의 수업연한은 해당 학년별로 1년으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 영재교육원에 해당 학년별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이천시 소재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2. 학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관찰·추천자료 20%, 창의적문제해결력 평가 40%, 심층수업평가 40%를 반영하여 선발 예정인원 내의 등위의 성적을 얻은 자로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로 한다.
4. 소외계층 일정비율 우선선발
 - 가. 최종선발 정원 중 10% 이내에서 소외계층 학생을 소속 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아 별도의 전형절차를 통하여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나. 소외계층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장애 학생, one-stop 서비스 1단계 기초수급대상자,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및 가정환경이 불우한 자로 그 세부적인 기준은 입학대상자 추천기관인 초, 중학교 장이 정할 수 있음
 - 다. 가.항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전형 선정인원이 10%미만인 경우 일반전형 선정인원을 추가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6조(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학급 수는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별 각 1개 학급으로 총 4개 학급으로 하며, 각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내로 편성한다.

제4장 입학

제7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학년 시작일로부터 6주일 이내로 한다.

제8조(입학결정) 본 영재교육원의 입학은 학칙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9조(입학서류) 본 영재교육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서약서)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증인)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제12조(결원보충) 영재교육원 입학대상자가 전학 등의 사유로 영재교육원에 입학하지 못할 시 후보 순으로 결원을 보충한다. 단, 교과 수업 시간의 10%를 초과한 이후에는 보충하지 아니한다.

제5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평가

제13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교과외활동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과활동: 과학·수학·발명·영어·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연간 90시간 이상 운영한다.
2. 교과외활동: 주제통합(탐구)활동 및 행사활동, 상담활동으로 구성하며 연간 30시간 내외로 운영한다.

가. 주제통합(탐구)학습 활동: 개인 또는 조별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탐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한 후 연구결과를 1편씩

제출하고 발표 또는 전시한다.

나. 체험활동: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 상담활동

· 연 2회 실시

· 학기 초 인성 및 적성관련 상담을 통해 영재학생들의 인성 개발에 힘씀.

라. 봉사활동: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마. 산출물 발표회

· 연 1회 실시

·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주제를 선정·수행한 후 결과를 발표 또는 전시한다.

제14조(교과용 도서)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함.

제15조(수업일수) 각 학년학급별로 주 1회(1회당 3시간)를 기본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연간 총 지도시간은 교과 90시간 이상, 교과외 30시간 내외로 총 120시간 내외로 한다.

제16조(평가)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연간활동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기록·보관한다.

제6장 학년, 학기, 휴업일

제17조(학년, 학기) 매 학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며 학기 구분은 하지 않는다.

제18조(휴업일) 연간 계획에 의거 교과활동과 교과외활동 실시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 및 법으로 정하는 임시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7장 전입학·휴학·퇴학 및 상벌

제19조(전입학) 예비합격자의 충원 기간이 지난 다음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일학군(구)내의 거주자로 당해 연도 타 지역 영재교육기관에 입학한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정원내에서 전입을 허용할 수 있다. (단, 해당학생의 무단결석 일수가 전출교 영재교육기관 총 교과 시수의 10%미만인 경우에 한 함)

제20조(휴학) 본 영재교육원은 비정규과정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학은 불허하며 퇴학으로 처리한다.

제21조(퇴학) 보호자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였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자는 퇴학으로 처리한다.

제22조(징계)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 출석 정지
2. 퇴학

제8장 과정의 수료

제23조(수료) 수료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학년별 교육과정의 수료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각 활동의 참여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총 교과 수업 시수의 90%이상이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속학교장의 확인서 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가. 소속학교, 소속교육지원청, 소속된 상위기관의 대표로 교육기관이 주최하는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
 - 나. 기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24조(평가작성·관리) 특별한 재능, 학업성취도 등 관찰 평가한 자료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여 작성·관리한다.

1. 작성한 자료는 학년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
2. 소속 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제9장 수업료 및 장학금

제25조(수업료, 입학금) 일체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징수하지 않으며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지원한다.

제26조(기타비용징수) 현장체험학습비 등은 수요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현장체험학습 전에 미참석을 통보할시 계약업체 환불규정에

의해 환불 할 수 있다.

제27조(소외계층지원) 제 26조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전형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장학금) 수학·과학 분야의 우수자에 수여하는 외부 장학금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선발·추천한다.

제 10장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제29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심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구성시기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공고 한 달 이내
2.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영재교육기관 관계자, 영재지도강사 중에서 영재교육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
3. 협의회 : 정기회 연 2회, 임시회(위원장 요구시)
4. 위원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기는 담당업무를 수행 또는 이천교육지원청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의사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30조(심의사항)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원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사항
3. 이 항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 본 학칙은 2018. 3. 13부터 시행한다.